

인천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가단2087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호

피 고 1. B

2. C

3. D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모

4. E

변 론 종 결 2022. 1. 12.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1. 피고 B은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0. 3. 16. 접수 제738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C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20. 3.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0. 3. 10. 접수 제660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D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2020. 7.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1, 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0. 7. 24. 접수 제2279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C, D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내지 3항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피고 E과 F은 망 G(2014. 6. 10. 사망)와 망 H(2020. 3. 12. 사망) 사이의 자녀들이고, 피고
D은 F의 배우자이다. 피고 B, C은 부부 관계이다.

나.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채권

1) 피고 E과 배우자 I는 2013. 1.경 원고 명의로 굴삭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중기대여사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7. 8.경까지 원고 명의로 부과된 세금 합계 115,854,440원을 체납하였다.

2) 원고는 피고 E과 I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20736호로 위 체납세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5. 26. 피고 E과 I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15,854,4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E과 I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다. 피고 E의 처분행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 G의 소유였다가, 망 G의 사망에 따라 2019. 10.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H이 3/9 지분에 관하여, 원고, 피고 E과 F이 각 2/9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H의 사망에 따라 2020. 7. 24. 망 H의 위 3/9 지분 중 원고, 피고 E과 F이 각 1/9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에 대한 처분행위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G로부터 상속받은 각 2/9 지분(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3. 16. 피고 B과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0. 3. 16. 접수 제738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C에 대한 처분행위

가) 피고 E은 2019. 2. 10. 피고 C에게 94,000,000원을 2019. 7. 31.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E은 2020. 3. 6.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G로부터 상속받은 각 2/9 지분(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150,000,000원에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 중 일부는 피고 C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0. 3. 10. 접수 제6609호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4) 피고 D에 대한 처분행위

가) 피고 D은 피고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0904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6. 13. ‘피고 E은 피고 D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9. 4.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 E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별지 목록 제1, 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각 1/9 지분(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7. 21. 피고 D과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0. 7. 24. 접수 제227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E에 대하여 115,854,44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원고가 망 G의 상속재산으로부터 원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돈을 수령하여 체납 세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중 71,111,112원 상당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2020. 3. 6.) 피고 E의 채무초과상태

가) 적극재산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G로부터 상속받은 각 2/9 지분 : 가액 합계 176,326,600원
(피고 C, D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직후인 2020. 3. 12. 망 H이 사망하였으므로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9 지분 또한 피고 E의 적극재산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에 따른 재산변동은 그 상속개시 시인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망 H의 사망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망 H의 재산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E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소극재산

- 원고에 대한 채무 : 115,854,440원
- 충주세무서에 대한 종합소득세 체납채무 : 162,286,180원
- 서인천세무서에 대한 종합소득세 체납채무 : 69,210원
- 충주시에 대한 주민세 등 체납세무 : 16,021,420원
- 인천광역시에 대한 주민세 등 체납 세무 : 12,87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 체납세무 : 1,657,820원
- 피고 C에 대한 차용금 채무 : 94,000,000원
- 피고 D에 대한 판결금 채무 : 64,591,005원
- 합계 : 454,492,945원

(피고 C, D은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 여부는 그 항소심에서 심리가 계속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피고 E은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여전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한국자산관

리공사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가

법인 J 경인지사(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 당시(2020. 7. 21.) 피고 E의 채무초과상태

가) 적극재산

○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G로부터 상속받은 각 2/9 지분과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각 1/9 지분 합계 각 3/9 지분,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각 1/9 지분 : 가액 합계 118,188,840원

나) 소극재산

○ 원고에 대한 채무 : 115,854,440원

○ 충주세무서에 대한 종합소득세 체납채무 : 162,286,180원

○ 서인천세무서에 대한 종합소득세 체납채무 : 69,210원

○ 충주시에 대한 주민세 등 체납세무 : 16,021,420원

○ 인천광역시에 대한 주민세 등 체납 세무 : 12,87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 체납세무 : 1,657,820원

○ 피고 D에 대한 판결금 채무 : 67,404,109원

○ 합계 : 363,306,049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J 경인지사(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이는 대물변제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 중 일부에 불과한 피고 C, D와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피고 D에게 각 차용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E의 재산 상태,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 E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 C,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 D은, 피고 E의 채무초과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대물변제로 제공받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 C, D은 피고 E으로부터 상당 기간 그 차용금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 C은 원고에게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 갈음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하나,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기도 전에 먼저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을 비롯하여 피고 C, D과 피고 E의 관계,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D이 피고 E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C, D과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므로, 피고 E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은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말소청구

피고 E이 피고 C으로부터 차용할 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결국 피고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E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는바, 피고 B은 피고 E에 대한 위 체납세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의 피고 E을 대위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E 소유이던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D 명의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배임행위를 하였는바, 그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 B, C, D이 피고 E 소유의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매매계약이 피고 E의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오로지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인혜